

- ⑨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(이를 같음하는 공로퇴직수당·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)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(「국가공무원법」 제74조의2제3항제1호, 제1호의2,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)
- ⑩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4)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신청 및 지급결정

가) 수당지급공고: 교육감은 매년 2회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·수당지급신청기간·수당 지급방법·수당지급일·수당지급절차 기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늦어도 수당지급 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시·도교육청 회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(「교육공무원명예퇴직 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」 제2조)

※ 매년 2월말, 8월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(2016년부터 수시명예퇴직 폐지)

나) 수당지급신청: 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내에 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교육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「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특례규정」 제3조)

다) 수당지급대상자 심사·결정: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① 수당지급대상자 결정 : 경기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.

- 상위직 공무원, 장기 근속 공무원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7조제3항)
-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원로교사
(「교육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특례규정」 제5조)

라)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

- 퇴직일에 지급한다. 다만,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.
-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.(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」 제5조)

5)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제외사유

-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16조(승진임용의 제한)제1호 휴직(「교육공무원법」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5조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중에 있는 경우
-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의4(수석교사의 임용 등) 수석교사인 경우
- 인사법령 상 최상위 직급에서 명예퇴직하는 경우
- 예정된 명예퇴직일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
- 교장 직위에서 원로교사로 임용된 자
- 보건교사를 제외한 비교과교사(영양, 사서, 전문상담교사)
- 징계기록 말소 미경과자
- 주요 비위자(「교육공무원임용령」 제15조제2항) 및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